

관리번호	[]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[]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(연말정산용) []소득자 보관용 []발행자 보관용 []발행자 보고용										소득자 구분
① 귀속 연도	년	거주구분	거주자1 / 비거주자2								
정 수	② 종교단체명			③ 대표자(성명)	④ 사업자등록(고유)번호						
의무자	⑤ 주민(법인)등록번호			⑥ 소재지(주소)							
소득자	⑦ 성명 ⑨ 주소			⑧ 주민등록번호							
종교인 소득	⑩ 발생처 구분	⑪ 종교 단체명	⑫ 사업자등록(고유)번호				⑬ 발생기간 (연·월·일)	⑭ 지급액 (비과세소득 제외)	⑮ 비과세소득		
	주(현)		—	—	—	—	—	· · ~ · ·			
	종(전)		—	—	—	—	—	· · ~ · ·			
소득 금액	⑯ 종교인소득(⑭)			⑰ 필요경비			⑱ 소득금액(⑯-⑰)				
⑲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(⑱)						구 분	소득세	지방 소득세	농어촌 특별세	계	
인적 공제	⑳ 본인	㉑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				㉒ 결정세액					
	㉓ 배우자	㉔ 종합소득과세표준				㉕ 기부 세액	㉖ 종(전) 근무지				
	㉗ 부양가족 (명)	㉘ 산출세액					㉙ 주(현) 근무지				
	㉚ 경로우대 (명)	㉛ 자녀 세액	㉜ 공제대상자(명)	㉝ 출산·입양자(명)	㉞ 연금계좌 세액공제		㉟ 차감 납부할 세액				
	㉛ 장애인 (명)										
	㉜ 부녀자										
	㉝ 한부모가족										
㉞ 연금보험료공제		㉟ 기부 금세액 공제	㉟ 정치자금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								
㉟ 기부금(이월분)			㉟ 우리사주조합								
㉟ 종합소득공제 계			㉟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								
㉟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			㉟ 표준세액공제								
㉟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			㉟ 외국납부세액공제								
㉛ 인적공제자 명세(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. 다만,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)											
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		
		-			-			-			
		-			-			-			
		-			-			-			

* 관계코드: 소득자의 직계존속=1, 배우자의 직계존속=2, 배우자=3, 직계비속(자녀, 입양자)=4, 직계비속(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)=5, 형제자매=6, 수급자=7(코드1~6제외), 위탁아동=8 * 4-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.

작성방법

-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,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. (※ ISO국가코드: 국세청홈페이지→국세정보→국제조세정보→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)
- "징수의무자"란의 "⑤주민(법인)등록번호"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.
-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(휴업·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·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)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"⑯ 지급액"란은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.
- "⑮ 비과세소득"란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(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·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)을 적습니다.
- "㉛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"란은 종교인소득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(별지 제37호서식(2))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"조합 등"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"㉟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(종교 관련 종사자)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,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"㉙ 차감 납부할 세액"란이 소액 부징수(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)에 해당하는 경우 "0"으로 적습니다.
-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.

기부금명세서

① 인적사항

정 수 의 무 자	① 종교단체명	② 사업자등록(고유)번호
	③ 소재지	(전화번호 :)
소득자	④ 성명	⑤ 주민등록번호
	⑥ 주소	(전화번호 :)

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

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

기부자 구 분	총 계	공제대상 기부금				공제 제외 기부금	
		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 1호의 기부금	정치자금 기부금	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 외)	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)	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코 드		10	20	40	41	42	10, 40, 41
합 계							
본 인							
배우자							
직계비속							
직계존속							
형제자매							
그 외							

④ 기부금 조정 명세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 제1쪽의 ⑩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(종교 관련 종사자)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,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- ⑦ 코드란: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 이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 -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: 코드번호 "10"
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: 코드번호 "20"
 -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(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,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): 코드번호 "40"
 -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: 코드번호 "41"
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: 코드번호 "42"
 -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·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(미지급분 기부금 포함): "공제제외 기타", 코드번호 "50"
- ⑧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"금전"으로,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"현물"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.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.
- ⑨ 상호(법인명)란: 상호·법인명·단체명·성명을 적습니다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).
-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: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·고유번호를 적습니다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). 다만,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·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"2. 해당연도 기부명세"의 최상단에 적고, ⑨ 상호(법인명)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.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정당(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)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.
- ⑪ 기부자란: 관계코드(1. 거주자, 2. 배우자, 3.직계비속, 4. 직계존속, 5. 형제자매, 6. 그 외),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.
-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: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·세액공제 대상에 해당(코드번호 "10", "20", "40" ~ "42")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: 코드번호 "10", "41", "42"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.
- ⑮ 기타란: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·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.
- ⑯ 3.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"는"2. 해당 연도 기부 명세"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56호서식)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.
11.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.
(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)

구 분	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 제1호의 기부금	정치자금 기부금	우리사주 조합기부금	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 외)	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)
코 드	10	20	42	40	41
이월공제가능기간	10년	-	-	10년	10년

12. "4. 기부금 조정 명세" 작성 방법

-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"3.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"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 금액(소멸금액)을 계산합니다.
-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.
-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, 기부연도, ⑯ 기부금액,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, ⑯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(계속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.
- 정치자금기부금,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,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.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.
2013. 12. 31.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며,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2014년 · 2015년 기부금, 2016년 이후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.
-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.
-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